

##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23년 4월호

### 1. 법률

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### 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가.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

나.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

다.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시행세칙

라.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

### 3. 한국거래소 규정

가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
나.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

다.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

라.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

마.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

### 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

나. 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

다.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

## 1. 법률

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행사요건 및 수단 명확화)

## 1. 법률\*

### 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2023/3/21 개정 · 2023/9/22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□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행사요건 및 수단을 명확히 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□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(제416조 제2항)

- 금융투자업자에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
  -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(受信)의 제한
  - 영업의 양도나 예금·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
  - 채무변제행위의 금지
  -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송금·자산이전 등 거래 금지
  - 투자자예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이나 지급정지
  - 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
  -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
  -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·조직의 축소
  -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
  -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과 제출한 보고서 또는 자료의 공시
  -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
  -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제한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

-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제한
  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-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
## 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(콜옵션 부여 (상환)전환우선주 관련 공시의무 강화)
- 나.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(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근거 마련)
- 다.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시행세칙 (산출업무규정 준수 및 이해상충관리 상황 보고 의무 마련)
- 라.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(금융정보분석원장의 대응조치 규정)

## 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\*

### 가.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(2023/3/30 개정·시행)<sup>1)</sup>

#### 1) 개정 이유

- (상환)전환우선주 관련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콜옵션 부여 (상환)전환우선주 관련 공시의무 강화(제4-4조)
  - 주권상장법인 발행한 콜옵션 부여 (상환)전환우선주의 경우, 제3자의 콜옵션 행사 및 상장법인이 자기 (상환)전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도시 공시의무 부과
- 콜옵션 부여 (상환)전환우선주 관련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(제5-24조의2)
  -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(상환)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를 (상환)전환우선주 발행 당시 지분율 한도로 제한
- 전환가액 조정 제도 정비(제5-24조의2)
  - 전환가액 조정이 가능한 (상환)전환우선주의 경우 전환가액의 결정, 하향 및 상향 등에 대해 전환사채에 준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등 전환가액 조정 제도 정비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## 나.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(2023/3/30 개정 ·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근거 마련(제5조 제3항)
  -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위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-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안건의 비공개 기간 변경(제8조 제1항)
  -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안건의 비공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변경

## 다.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시행세칙 (2023/3/6 제정 · 2023/3/8 시행)

### 1) 제정 이유

- 「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법령상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감독업무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예탁원에 산출업무규정 준수 및 이해상충관리 상황 보고 의무 마련(제3조, 제4조)
  - 감독당국이 확인가능하도록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부여
    - 각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제출
    - 산출업무규정은 중요지표산출기관 업무수행을 위해 지표법에 따라 규정 산출기관 내 이해상충관리, 기초자료제출기관 관리·감독 방법 등을 명시한 산출기관 자체 규정
- 분기보고서 기재사항(별지 1 제2호)
  - 산출업무규정 준수현황, 공시사항의 적정성, 관리위원회 운영의 타당성 기재
    - 관리위원회는 예탁원 산하 기관으로, 산출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정, 기초자료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

□ 연차보고서 기재사항(별지 1 제1호)

- 분기보고서 항목에 중요지표 산출 및 검증과정, 내부통제, 이해상충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 기재

**라.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(2023/3/21 개정 · 시행)**

**1) 개정 이유**

-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 제4차 상호평가 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통해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및 자금세탁 방지제도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

**2) 주요 내용**

□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(제72조 제2항)

-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등이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거래시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응조치가 위험에 상응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규정

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외국기업 예비심사 신청시 자회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)
- 나.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(시가배당을 산정 방식 정비)
- 다.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(중소기업의 연회비 면제 조건 추가)
- 라.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(증거금 운용비용 산출 시 원화 적용을 인하)
- 마.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 (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개정)

3. 한국거래소 규정\*

가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3/3/9 개정 · 2023/3/13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코스닥시장 예비심사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, 상장주선인 자격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상장신청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 시 상장주선인 자격요건 합리화(제28조, 제67조)
  -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시 상장주선인 자격요건을 기술특례상장 운용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편
    - 상장주선인 자격요건 중 ‘최근 3년 이내 외국기업 상장주선 실적’을 ‘최근 3년 이내 기술성장기업 상장주선 실적’으로 변경
- 외국기업 예비심사 신청시 자회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(별표 1, 별표 3)
  - 국내 소재 외국자회사 및 외국지주회사의 일정규모 이하(지주회사 자산 총액의 10% 이하)의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제출의무 면제
-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심사기간 확보 근거 명확화(제10조)
  - 심사기업 관련 중요사항 확인 및 검토를 위한 심사기간 확보 근거 명확화
    - 심사회사의 재무상황, 영업활동, 지배구조, 내부통제제도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 요청 및 검토가 필요한 경우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## 나.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(2023/3/29 개정 · 2023/4/1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시가배당을 산정 방식을 정비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시가배당을 산정 방식 정비(제6조의3)
  -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을 시가배당을 산정 기산일로 하도록 정비

### 3) 관련 규정

-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(2023/3/29 개정 · 2023/4/1 시행)
  - 제7조

## 다.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(2023/3/14 개정 · 2023/3/16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내시장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연회비를 면제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연회비 면제 조건 추가(제6조의3)
  - (면제대상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
  - (검증방법) 해당 회원에 제출한 중소기업 확인서로 확인
    - 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 제6조 제1항에 따른 서류로서,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후 발급

## 라.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(2023/3/24 개정 · 2023/3/27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증거금 운용비용 산출 시 원화 적용률을 외화 적용률과 통일하여 회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증거금의 원화 현금납부 (원화, 외화, 대용증권(국채 등) 등) 유인을 통한 유동성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증거금 운용비용 산출 시 원화 적용률 인하(별표 1)
  - 증거금 운용비용 산출 시 원화 적용률을 15%에서 12%로 인하
    - 2023년 1월 증거금 현금 운용비용 적정성 분석 외부 연구용역 결과 현행 증거금 운용비용 산출 시 적용률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금리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정 검토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있으나, 고금리 기조 유지세 등을 감안하여 증거금 운용 비용 산출 시 원화 적용률을 선제적으로 인하

## 마.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 (2023/3/31 개정 · 2023/4/3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정부(금융위원회 · 환경부)가 녹색채권에 대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고 그린워싱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
- SRI채권 등록 및 상장 실무를 반영하여 등록대상 SRI채권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정부(금융위원회 · 환경부)가 제정한 '녹색채권 가이드라인' 명칭 변경(제4조 제2호 가목, 별지 제1호 서식)
- 그린워싱(Green Washing) 우려 감소를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(Green Bond Guidelines)을 준거하는 녹색채권에 대해 외부평가 강화(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)
  - 최종 조달자금사용보고서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의 외부평가를 받아 제출할 것을 의무화

- 한국형 녹색채권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등록제도 시행에 따른 외부 평가기관의 요건 반영(제2조 제10호)
  - 외부평가기관의 정의에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요건에 부합하는 자 포함
  
- SRI채권 등록 및 상장 실무와 지침 간의 불일치 가능성 완화(제4조 제1호)
  - 전용 세그먼트 등록대상 채권을 이미 상장된 채권뿐만 아니라 상장 예정인 채권으로 확대

#### 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개정)
- 나. 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(건전한 대차거래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)
- 다.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(여전채 편입한도 8% 적용시기 유예)

## 4. 금융투자협회 규정\*

###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2023/3/13 개정 ·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「금융투업규정 시행세칙」 개정(2022. 12. 15.)에 따라 관련 보고서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(별지 제1호) 개정
  - 별지 제1호의 제1호 서식 중 투자자예탁금 예치현황에 관한 사항 양식 변경(통화별 구분 추가)

### 나. 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(2023/3/13 제정 · 시행)

#### 1) 제정 이유

-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, 채권 등을 대차거래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 펀드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대차거래 업무의 투명성·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(제3조)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회사는 대차거래를 실시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펀드자산을 운용하여야 하며,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함

□ 대차거래 절차(제5조)

- 착오에 의한 대차거래 또는 임의적인 대차거래 등을 방지하고, 제반 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조건(종목, 수량, 요율 등)의 확정, 거래 체결 및 신탁업자를 통한 실물 인수도 등 대차거래 업무 프로세스별로 적절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·운영하여야 함

□ 이해상충 관리(제9조)

- 회사는 대차거래의 중개회사 또는 거래상대방 등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함

□ 대차거래 정보관리(제10조)

- 대차거래 계약체결 일시 등 개별 대차거래 및 대차잔고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
  - 개별 대차거래의 종목, 수량, 확정일시, 대차거래 결제일시, 거래상대방 등 세부내역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

□ 내부통제 및 사후관리(제12조)

- 회사는 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전반의 업무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되고 제반 리스크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함
- 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운용부서와 독립적인 준법감시부서등을 통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

## 다.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(2023/3/31 개정·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금융위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 및 금융회사의 유동성·건전성 현황을 점검 등을 위해 「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」를 개최(2023. 3. 27.)
  - 2023년 4월부터 8%로 적용 예정이었던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중 여전채 편입한도(2023년 3월말까지 12%)를 3개월 유예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는 12%를 유지토록 발표
    -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개최(금융시장·부동산 PF 시장 상황 점검 및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연장방안 논의 (금융위, 2023. 3. 27.))
- 이에 따라 「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」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

## 2) 주요 내용

### □ 여전채 편입한도 8% 적용시기 유예(제38조의5 제1항)

-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여전채 편입 한도 '8% 이하'를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
-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여전채 편입한도를 '12% 이하'로 함

| 기존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▶ | 개정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구분       | 규제 비율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구분       | 규제 비율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         | ~'22. 12. 30. | '22. 12. 31.<br>~'23. 3. 31. | '23. 4. 1.~ |   |          | ~'22. 12. 30. | '22. 12. 31.<br>~'23. 6. 30. | '23. 7. 1.~ |
| 여전채 편입한도 | 15%이하         | 12%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| 8%이하        |   | 여전채 편입한도 | 15%이하         | 12%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| 8%이하        |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